□ 장애인 노인,임산부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

근 거	항 목	적 용	적 용 기 준	설계 적용	검 토 결 과	비고
규정조 장애인, 임산부증진 보안해한 법행령 시장애인, 의진 보안하는 일산부증에 발립하다 집합 보안한 법행규칙		통행가능한 보도 및 접근로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및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 1.2미터이상, 50미터마다 1.5미터× 1.5미터이상상의 교행 구역을 설치, 30미터 마다 1.5미터× 1.5미터 이상의 평면 으로 된 참을 설치 나. 기울기- 18분의 1이하, 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 다. 경계 - 보도와 차도 분리, 곤란한 경우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 라. 재질과 마감 -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란하게 마감,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 마. 보행장애물 -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 한다.	 규정준용 1/18, 1/12 이하로 계획 ·연석높이 ·지정마감 ·장애물없음 	적법함	-
	장애인 등 의 편의시설	주차구역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높이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이상 나. 주차공간 - 폭 3.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폭 2미터이상, 길이 6미터이상 다. 유도 및 표시 - 장애인전용표시, 안내표지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 주출입구 주변에 배치함 · 규정준용 하여 설치	적법함	-
		출 입 구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가. 탁낮추기 - 2센티미터 이하나. 혈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 제11호 및 제12호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규정 적용의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 0.8미터이상, 유효거리는 1.2미터이상, 자동문 아니면 출입문옆에 0.6미터이상나. 문의 형태 - 회전문을 제외,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 닫히는 시간이 3초이상 충분하게 확보,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출입문의 손잡이는 0.8미터와 0.9미터사이에 위치, 공중의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	 규정준용 하여 설치 0.8m, 1.2m 이상 확보 ·점자판부착 ·출입구 기준 준용함 	적법함	-

근 거	항 목	적 용	적 용 기 준	설계 적용	검 토 결 과	비고
규정 제22조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증진 보장애	· 상 애 이	복 도 및 통로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가. 유효폭 - 1.2m이상, 복도 양옆에 거실이있는 경우에는 1.5m이상 나. 바닥 - 단차제거,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 다. 손잡이 - 장애인전용시설의 복도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 손잡이의 높이 0.8미터이상 0.9미터 이하, 손잡이의 지름은 3.2센티미터이상 3.8센티미터 이하,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내외,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 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 라. 보행장애물 -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 폭은 0.1미터이하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이상의 유효 높이를 확보 마. 안전성 확보 - 복도의 벽면에는바닥면으로부터 0.15미터에서 0.35미터까지 킥플 레이트를 설치	· 규정준용 하여 설치	적법함	-
법률 시행명 장애인, 오인사부의 보장에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의 편의시설	계단설치 기 준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가. 계단의 형태 -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이내 마다 참을 설치 나. 유효폭 -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미터이상, 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은 0.9미터 이상 다. 디딤판과 챌면 - 챌면을 반드시 설치, 디딤판의 너비는 0.28미터이상, 챌면의 높이는 0.18미터이하 라.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규정을 적용 마. 재질과 마감 -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이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 바. 기타 설비 -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센티미터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	· 규정준용 하여 설치함	적법함	-

근 거	항 목	적 용	적 용 기 준	설계 적용	검 토 결 과	비고
규정 제22조 장애인, 임산부증진 임산부증진 보장에 법률 령 지안보통에 임산부증에 보안하 법률규칙	장애인 등 의 편의시설	승 강 기	7. 장애인용 승강기	·출입구와 가깝게 설치 · 내폭 1.6m x 1.45m (15인승) · 규정준용 하여 설치	적법함	-
		에스컬레이터	8.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가. 유효폭 및 속도 - 0.8M이상, 속도는 분당 30미터이내 나. 디딤판 -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은 3매이상 수평상태로 이동, 시작과 끝부분의 바닥판은 얇게 할수있다 다. 손잡이 - 이동손잡이를 설치, 수평이동손잡이를 1.2미터이상 설치,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는 1M이상의 수평고정 손잡이를 설치 층수ㆍ치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	• 해당없음	-	-

근 거	항 목	적 용	적 용 기 준	설계 적용	검 토 결 과	비고
규정조조 장애인, 의진 보안하는 법이 아이는 의진사 사건의 의장이 한법이 있는 의진 사건의 장아한 법이 이 있는 의진 보안하는 법이 되었다. 의진 보안하는 집에 대한 기계를 지하는 지수에 가장이 되었다. 의진 보안하는 지수에 가장이 되었다. 기계를 지하는 기계를 지하		휠체어리프트	9. 휠체어리프트 가. 일반사황 - 계단 상부 및 하부 각 1개소에 1.4M× 1.4M이상의 승강장을 설치, 시설관리자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설치 돌받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정지 시킬수 있고, 과속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 나.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폭 0.76M이상, 길이 1.05M이상, 자동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지장치를 설치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정장소에 접어서 보관 다.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을 폭0.9M이상, 깊이 1.2M이상	• 해당없음	-	-
	장애인 등 의 편의시설	경 사 로 설 치	10. 경사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 유효폭은 1.2M이상, 0.9M까지 완화, 0.75M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 × 1.5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 나. 기울기 - 12분의 1이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다. 손잡이 - 경사로의 길이가 1.8M이상이거나 높이가 0.15M 이상인 경우 연속하여 설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M이상 연장하여 설치 라. 재결과 마감 -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 5cm이상의 추락 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 마. 기타 시설 -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	· 규정준용 하여 설치	적법함	-
		화 장 실 설치기준	11.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일반사항 - 설치장소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 나. 재질과 마감 - 단차제거,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 화장실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 다. 기타 설비 - 출입구(문)옆 벽면의 1.5미터 점자표지판을 부착,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 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	· 장애인회장실 규격반영 (1.4mX1.8m)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 치기준 준용 하여 계획	적법함	-

근 거	항 목	적 용	적 용 기 준	설계 적용	검 토 결 과	비고
규정조 장애인, 임산부의 임산부의 임산사무의 보관한 물행명 장애인, 의산부등에 임산부등에 범행규칙 보장에 범행규칙	장애인 등 의 편의시설	화 장 실 설치기준	라. 대변기 - 폭 1.4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이상 1) 구조 - 양변기형태,대변기의 최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이상 0.45M이하, 손잡이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M 이상 0.7M이하의 높이에 설치,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M이상 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 부터0.6M내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 마. 소변기 (1) 구 조 - 바닥부착형 (2) 손잡이 -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내외,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 내외 바. 세면대 (1) 구조 - 바닥으로부터 0.85M이하, 하단높이는 0.65M 이상 (2) 손잡이 및 기타 설비 - 수평손잡이를 설치,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 거울은 세로길이 0.65M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 부터 0.9M내외로 설치	· 장애인화장실 규격반영 (1.4mX1.8m)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 치기준 준용 하여 계획	적법함	
		욕 실 설치기준	12.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가. 설치장소 -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 나. 구 조 -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휠체어 활동공간을 확보,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 으로부터 0.4미터이상 0.45미터 이하 다. 바 닥 - 단차제거,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 라. 손잡이 -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 마. 기타 설비 - 수도꼭지는 광감지식ㆍ누름버튼식ㆍ레버식등 사용, 병ㆍ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 에 레버식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욕조에는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 욕실에서 손 닿는 위치에 비상용 벨 설치 해야 한다.	• 해당없음	-	-

근 거	항 목	적 용	적 용 기 준	설계 적용	검 토 결 과	비고
규정조오 아이 122조 장애인 도인사의 전에 122조 장애인 도인사의 전한 보안하는 일이 12조에 보장에 보고 보장에 보고 보장에 범률 지행 규칙 기행 규칙 기행 규칙 기행 규칙		샤워실 및 탈의실 설치기준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가. 설치장소 -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 나. 구조 -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샤워실 0.9M× 0.9M 또는 0.75M×1.3M이상 다. 바닥 - 기울기는 30분의 1이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 라. 손잡이 -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를 설치 마. 기타 설비 -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냉・ 온수기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 샤워용 접이식의자를 바닥면으로부터 0.4M이상 0.45M이하의 높이로 설치, 탈의실의 수납공간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4M이상1.2M이내로 설치	• 해당없음	-	-
	장애인 등 의 편의시설	점 자 블 록	14. 점자블록 가. 규격 및 색상 -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 점자블록의 크기는 0.3M×0.3M인 것을 표준형,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 돌출점의 높이는 0.6± 0.1cm, 선형블록은 블록 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 출선의 높이는 0.5± 0.1cm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 나. 설치방법 -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선형 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 규정준용 하여 설치	적법함	-
		유 도 안내설비	15.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 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안에 있도록 설치 나. 음성안내장치 -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 으로 안내 다. 기타 유도신호장치 - 음향·시각·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 16.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 규정준용 하여 설치	작법함	-